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15
----------	------

2021년 3월 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5일, 정진술 의원 (찬성자 11명)
- 나.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1년 3월 2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진술 의원)

가.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 및 구조·구급의 업무 보조 등 임무 수행과 이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부상을 입거나 사망 등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및 임무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안정된 소방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4항)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20.12.08)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표 1] 현행과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의용소방대원의 장애의 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p>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p>

■ 의용소방대 운영 및 재해보상금 지급 현황

- 2020년 기준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총 195대 4,83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 같은 해 기준으로 총 16,189회 출동하여 연인원 46,235명이 소방업무를 보조하였고 이 같은 고유 임무수행 이외에도 봉사활동 등으로 총 1,659회(연인원 3,430명)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 참조)

[표 2] 2020년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운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총 3,902대, 총 96,561명으로 구성 활동 중 - 서울시 총 195대 4,832명(현원)으로 구성 활동, 정원은 4,860명 ○ 출동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총 16,189회, 연인원 46,235명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 ○ 봉사활동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총 1,659회, 연인원 3,430명 출동하여 봉사활동 전개

[표 3] 서울시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세부실적 현황(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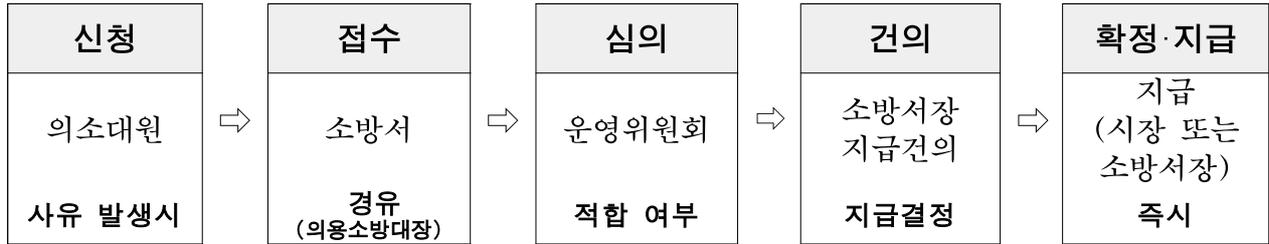
구분	계	김장 봉사	연탄 배달	마스크 기부행사	배식 봉사	불우이 웃돕기	목욕 봉사	장애인 시설보조	자연 보호	기타
건수	1,659	25	2	13	1,345	147	3	15	8	101
인원	3,430	25	67	111	1,926	654	55	134	80	378

○ 법 제17조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따르면, 의용소방대가 법 제7조3)에 따른 임무의 수행과 법 제13조4)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혹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여기서, 재해보상금 지급은 신청→접수→심의→건의→확정의 총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단계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 약 1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그림 1〕 참조), 최근 3년간 서울시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지급 건수는 총 2건에 해당함. (〔표 4〕 참조)



[그림 1] 현행 재해보상금 지급 순서도

[표 4]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지급현황(2건)

연번	성명	사고일시	진단명	보상금 지급액
1	○○○	'19.5.23. 14시경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부분파열	4,465,200원
2	○○○	'20.1.7. 11시경	좌측 전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전관절 충돌증후군	3,566,200원

- 다만, 현행법 상 재해보상금 지급범위가 법정 임무수행 또는 교육 및 훈련 중에 발생한 재해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울산광역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해보상금 대신 단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5] 타·시도 자원봉사 관련 보험가입 및 보상 현황

구분 시·도	가입인원	보험기간	소요예산(원)	1인비용	보상건수	비고
울산광역시	1,527	20.2.1~21.2.1	2,885,670	1,880	2건	
충청남도	9,705	20.3.13~21.3.13	20,914,000	2,130	1건	
창원시	1,155	20.5.1~21.5.1	1,674,750	1,450	2건	

■ 개정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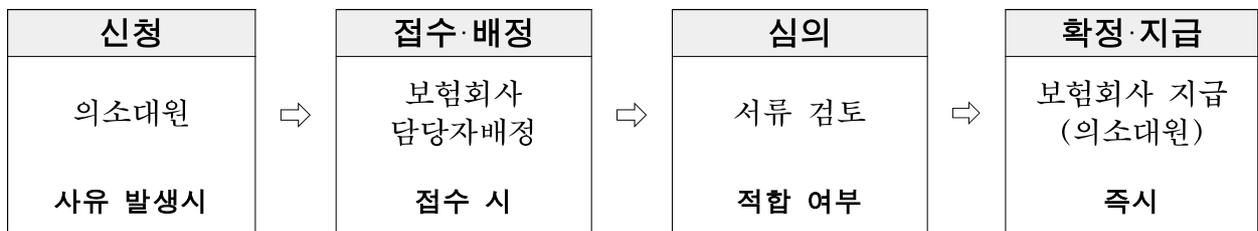
- 안 제18조제4항의 신설은, 법 제17조 개정으로 기존에 예산에서 지급되던 재해보상금을 시·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보험 가입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조례에도 반영하려는 것인데 법 제17조제2항과 달리 재량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설치하는 것이 다른 점임.
- 본 개정안이 이처럼 보험가입을 강행규정으로 설치하려는 취지를 살펴보면, 현행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심의에 필요한 각종 서류⁵⁾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 준비로

5)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요양, 장애, 장애, 유족)보상청구서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애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애·유족보상 :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인한 불편함이 재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회피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됨.

- 즉, 현행과 같이 재해보상금 지급 신청에 의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해보상금을 수령하기 보다는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당한 의용소방대원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보다 용이([그림2] 참조)하고 행정력도 절약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 여겨짐.



[그림 2] 보험가입 후 지급 순서도

- 따라서 본 개정안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할만하다 할 것이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서울시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지급 사례가 총 2건에 약 8백만 원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으로 대체할 경우 예산의 득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 또한, 상위법이 보험가입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위 조례가 시·도지사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설치할 경우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임.
-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본 개정안의 보험가입 강행규정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재량규정으로 수정하여 시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고,

-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임무와 교육·훈련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행은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규정이 없는 관계로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 [표 6]과 같이 의용소방대 소방임무 수행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 보험가입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봉사활동 독려가 필요하다 사료됨.

[표 6] 개정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

- 마지막으로, 개정안 부칙과 관련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된 법 시행일(2021.6.9.)과 일치시킨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15
----------	------------

제안일자 : 2021년 3월 2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임무와 교육·훈련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보상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가입과 관련한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험가입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보상도 포함토록 함.(안 제18조제4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제1항에 따 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u>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 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 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8조(재해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